

**부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480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**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9년 10월 7일

부 천 시 장 (인)

1. 입안 및 결정권자 : 부천시장

2. 결정(변경)취지

- 원미로144번길(소로2-480호선)은 진출입부 폭원 협소에 의한 차량 교행 시 충돌위험, 건축물에 의한 시거부족 등 위험요소가 산재함에 따라 교차로 부분 폭원 확장을 통한 각각부 확보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함.

3. 위 치 : 원미동 76-1번지 일원

4. 주요내용 : 소로2-480호선 기점부 폭원 확장 (B=8m → 8~13m)

5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
-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2	480	8	국지 도로	322	중로2-1 원미동3	소로3-342 원미동 산20-3	일반 도로		1981.7.13. 경고81-195	
변경	소로	2	480	8~13	국지 도로	322	중로2-1 원미동3	소로3-342 원미동 산20-3	일반 도로		1981.7.13. 경고81-195	

■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 2-480호선	소로 2-480호선	· 소로2-480호선 기점부 도로폭원확장 - B=8m → 8~13m	· 도로 기점부 폭원 협소에 따라 기점부 폭원 확장을 통한 도로 안전성 확보

6. 관계도면 : 지면상 실음 생략

※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lit.go.kr>) 및 부천시 홈페이지(<http://www.bucheon.go.kr/>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032-625-3442)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